

<참조>

忠清北道事務의 委任條例中改正條例(案)

檢 討 報 告

1. 提出者 : 忠清北道知事

2. 提出日字 및 回附日字

가. 提出日字 : 1992. 2. 26

나. 回附日字 : 1992. 2. 27

3. 提案理由

- 當初 工業配置法의 根據에 의한 忠清北道事務의 委任條例中(工業課所管) 工場의 登錄, 工場 整備命令, 基準超過用地 賣却, 工場移轉 命令의 違反措置등에 관한 委任事項이 根據法 廢止에 따라 本 條例의 關係項目을 刪除整備하려는 것임.
- 當初 工業配置法은 法律 第4212號(1990. 1. 13)로 制定된 工業配置 및 工場設立에 關한 法律 附則 第2條에 의거 廢止되었음.

4. 主要骨子

忠清北道 事務의 委任條例中 工業課 所管 21件中(今回) 5件 刪除 16件 은 現行 存續

<削除內容>

소 관	일련번호	현 행 (삭 제)	개 정 후 조 치
공 업 파	10	공장등록증명	시장군수 고유사무로 규정
"	15	이전축진지역 및 계한정비 지역안의 기존공장의 등록 및 변경등록	충북은 해당없음.
"	16	기존초과용지의 폐각	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, 군수에게 재워임된 ※ 관련서류 별첨
"	17	공장정비명령통	폐지
"	18	공장이전명령의 위반에 대 한 조치	상공부장관에 환원됨.

5. 檢討意見

忠淸北道事務의 委任條例中(案)을 檢討한 結果 工業課 工業課 所管의 委任事務中에 當初 委任 根據法(工業措置法)이 廢止되고 工業配置 및 工場設立에 關한 法律이 새로이 制定 公布되었습니다. 本件은 事務委任의 法的根據 變動事項으로서 關聯 條例改正은 必然的으로 隨伴되는 要因이 되겠습니다. 制定法規를 遵守하고 所管事務의 圓滑한 推進을 為하여 忠淸北道事務의 委任條例改正案(工業課 所管)은 承認하여 줌이 安當하다고 思料됩니다.